

# 해방 후 한국 교양교육의 두 기원

홍성기 \*

1. 서문
2. 한국 교양교육의 기원 문제1  
: 1946년 조선교육심의회 지정 5개 필수과목
3. 한국 교양교육의 기원 문제2  
: 1952년 교육법시행령의 일반교양과목
4. 두 기원의 병합

## ■ 국문요약

한국 교양교육의 기원에 대해서는 해방 직후 미군정기에 미군 장교 혹은 군정청 학무국에서 일한 한국인, 특히 미국 유학자들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그것은 1946년 3월 한국인들이 주도하고 미군이 참여한 조선교육심의회에서 국어, 문화사, 자연과학개론, 외국어 및 체육 등 5개의 필수과목을 제정하였고 이 교과목들이 바로 미국식 교양교육의 시작이라는 주장이 20세기 고등교육사를 연구한 교육학자와 일부 교양교육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특히 1960년에 발간된 『韓國教育十年史』에서 이 교과목들을 미국의 대학제도를 모방한 일반교양과목이라고 기술하면서 이런 추측의 문헌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

\*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명예교수, ajouphil@ajou.ac.kr

1946년의 필수과목은 미국식 교양교육과 무관하며, 1952년 교육법시행령에 도입된 배분이수 일반교양과목은 전후 신제 대학으로의 전환과 관련 일본의 대학기준협회가 1947/48년에 만든 명칭과 교과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1953년 철학개론을 추가한 6개의 필수과목과 1952년의 배분이수 교과목을 일반교양과목으로 부르면서 해방 후 한국 교양교육의 두 기원이 합쳐졌다. 전자는 교양필수로, 후자는 교양선택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이후 교양필수는 국가, 대학, 총장 등등이 교양교육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고착되었고, 교양선택은 그 비중이 매우 약화되었다.

주제어 ● 교양교육, 기원, 일반교양과목, 필수과목, 조선교육심의회

## 1. 서문

한국의 현 대학교육 제도의 기원에 대하여 널리 퍼진 주장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하고 해방된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에서 같은 해 9월 9일부터 미군정이 시작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약 3년간 지속되었다. 이 기간 중에 군정청 학무국 내지 군정청 문교부의 주도하에 미국식 대학제도가 한국으로 이식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도입된 미국식 대학제도에는 해방 전 경성제국대학의 강좌제를 학과제로, 학년 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진급과 졸업을 할 수 있는 학년제가 개별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졸업에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하면 학위를 얻을 수 있는 학점제로 바뀌었으며, 해방 전에는 없었던 교양교육이 대학교육에 도입되었다는 것이다.<sup>1)</sup>

---

1) 이런 주장은 물론 ‘교양교육’ 혹은 ‘교양교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해방 후 한국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된 일부의 교과목들, 예를 들어 <자연과학개론>을 ‘교양 교과목’이라고 단정하고 교양교과목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무조건 교양교육이라고 한

우선 학과제와 학점제는 분명 미군정기에 도입되었으며 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다른 한편 미군정기에 미국의 교양교육이 도입되었다는 주장은 단순한 추측일 뿐 지금까지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여러 문헌들과 논문이 그러한 추측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은 문헌 연구에 입각하여 해방 후 한국 교양교육의 기원에 대한 사실 판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한국 교양교육의 기원 문제1

### : 1946년 조선교육심의회 지정 5개 필수과목

1960년 발간된 『韓國教育十年史』의 「제1장 군정하의 교육」에는 1946년 조선교육심의회가 지정한 5개의 필수과목인 국어, 문화사, 자연과학개론, 외국어 및 체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군정 당시 대학에서 실시한 교육 내용이라고 하여 특수한 것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고 교과목 분류에 있어서의 일반교양과목인 것이다. 대학에서 교수 연구할 과정을 삼분하여,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한 것인데 전공과목, 선택과목은 일정시에도 동일한 명칭으로서 분류하고 있었으나 일반교양과목이라는 명칭과 내용을 규정한 것은 해방후의 대학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양의 양성을 위하

---

다면, 해방 전에도 교양교육은 당연히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가 2008년 출간한 『교양교육 60년사』에는 경성제대예과 혹은 일본의 제1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대학 교양교육이라고 보고 있다.(pp.9-17) 또한 이런 관점에서는 경성제대예과의 교육과정은 물론 연희전문, 이화여전 등 선교사들이 설립한 자유학예대학(liberal arts college)인 전문학교들에서도 교양교육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미군정에 의해 해방 후 미국식 교양교육이 처음 도입되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대학교육 영역의 하나로서 ‘general education’ 혹은 ‘liberal (arts) education’이 존재하고 이에 상응하는 명칭이 사용되어야 한다.

여 필요하다고 하여 제정된 것이 국어, 자연과학개론, 문화사, 제이외국어, 체육 등이다. 이것을 일반교양과목이라는 명칭하에 실시한 것이다. 日政時에는 일반교양과목이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최고학부의 지식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지식과 교양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일반교양과목 제도는 역시 미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韓國教育十年史刊行會, 1960, p.91)<sup>2)</sup>

위 인용문의 주요 주장을 그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해방 직후 대학 교육과정을 일반교양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으로 3분할
- ② 일정 하에서도 전공과목, 선택과목은 동일한 명칭으로 분류
- ③ 해방 직후 국어, 자연과학개론, 문화사, [제2]외국어<sup>3)</sup>, 체육 등을 ‘일반교양과목’이라고 부름
- ④ 일정 하에서도 ‘일반교양과목’이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교양의 함양에 필요한 교육 실시
- ⑤ 해방 직후 일반교양과목의 도입은 미국의 제도를 모방

5개의 주장 중에서 ③과 ⑤는 위 맥락에서는 논리적으로 동치 혹은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다. 따라서 만일 1946년 한국의 대학에 미국의 ‘general education(GE)’이 도입되었다면, 앞의 5개의 필수과목을 미군정기 당시에 ‘일반교양과목’이라고 부른 문헌이 존재해야 하며, 역으로 만일 그러한 문헌이 존재한다면 미국의 GE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용어가 당시의 문헌 즉 해방 후 설립되었거나 승격된 대학의 교과과정이나 학칙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sup>4)</sup> 아래의 표는 1946

2) 이 문헌은 해방 후 한국 교육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실들을 담았으며, 백낙준, 유진오, 이선근, 오천석, 한호상, 최현배, 오천석 등등 47명이 고문, 회장, 주간, 편집위원, 집필위원 등으로 참여하여 출간하였다.

3) 외국어의 오기라고 보인다.

4) 1946년 3월 7일 조선교육심의회 의 건의에 따라 군정청은 대학령과 학위령을 공포하였는

년~1948년 사이에 인가된 주요 대학들을 조사한 결과이다.

대학명	교육 과정	인가 년도	비고
고려대학교 (승격)	必須科目, 選擇科目	1946	필수와 선택에 비전공·전공 혼재 국어(4), 국사(4), 서양사(4), 동양사(4), 자연과학개론(4), 제 1 외국어(12), 제 2 외국어(8), 체육(16)
단국대학교 (설립)	必須科目, 選擇科目	1947	필수와 선택에 비전공·전공 혼재 법률학부 필수: 국어(4), 영어(8), 국사(4), 자연과학개론 (4), 선택: 문화사(4)
동아대학교 (설립)	必須科目, 選擇科目	1946	필수와 선택에 비전공·전공 혼재 정치경제학과: 국문학(4), 문화사(4), 자연과학(4), 제 1 외 국어(16), 제 2 외국어(4), 체육(8)
서울대학교 (계승)	必須學科目, 專攻科目, 選擇科目	1946	조선교육심의회 지정 5개 필수과목 국어 내지 국문학(8), 문화사(4), 외국어 내지 외국문학(8), 자연과학개론(4), 체육(8, 매 학기 1)
성균관대학 (설립)	必須科目, 選擇科目	1946	필수와 선택에 비전공·전공 혼재 1951년 불문학과 교육과정: 국어, 철학개론, 자연과학, 영 어, 제2외국어, 문화사, 체육 포함
숙명여대 (승격)	必須科目, 選擇科目	1948	필수과목은 공통필수와 전공, 공통필수과목은 조선교육심 의회 지정 5개 필수과목
연희대학교 (승격)	必須學科目, 專攻科目, 選擇科目	1946	필수(30), 전공(60), 선택(90) 국어(6), 문화사(3), 자연과학개론(4), 종교(6), 체육(8). 외국어(12)는 필수과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취득 요구
이화대학교 (승격)	—*,選擇 科目	1948	* 명시적이거나 ‘공통필수’라는 용어 사용. 과목 구성은 학 과에 따라 다름. 기독교 사회사업과: 한국어(8), 문화사(4), 자연과학개론(4), 영어(32), 체육(8)
춘천농업대학 (설립)	必須科目, 選擇科目	1947	필수(1학년):국어, 영어, 수학, 물리학, 화학, 자연과학개론, 문화사, 헌법, 법학통론, 철학개론, 논리학, 민주주의론, 국 사, 재배학법론, 경제원론, 일반식물학, 일반동물학,

이 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방 후 최초의 국립종합대학교로 인가를 받은 부산대학교(1946.5)는 승인 후 예과를 설치하였으나 전공학과는 없었 으며 또 확정된 교과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한편 『부산대학 교 오십년사』는 “교수 각자가 매 학기 초에 임의로 신청하는 교양과목만

데, 여기에 필수과목이 포함되어 있다.(김영우, 1995, p.252)

개설해 나갔다”고(부산대학교, 1997, p.32)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양과목’이란 1946년 당시 사용한 용어라기보다는 당시 교과과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기록도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을 출간한 시점에 집필자의 ‘사후의 관점’에서 과목의 성격을 특징 지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강원대학교의 전신인 춘천농업대학(1947)의 경우 『江原大學校 五十年史』에는 “이때의 교과목 편성도 현재와 같이 기초교양과목, 필수전공, 부전공, 선택과목들이 있었으나(...) 이때 1학년 기초교양과목은 한국의 석학이라 할 만한 분들이 강의를 담당하였다”고(강원대학교, 1997, p.4) 되어 있다. 이때 ‘기초교양과목’이라는 표현 역시 집필자가 사후의 관점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초교양’이라는 용어의 출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질 만큼 긴 배경이 있는데,<sup>5)</sup> 해방 직후 사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책에 ‘학점제 실시’와 관련하여 “졸업 소요학점은 180학점으로 하되, 3분의 2(120학점)는 필수과목으로 3분의 1(60학점)은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p.174) 기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1952년

---

5)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에 ‘기초교육’이 도입된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다. 교양교육 담당자들도 교양교육이 전공기초적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또 서양 대학의 역사를 보면 중세대학에서 학예학부(faculty of arts)는 하위학부로서 상위학부인 신학부, 법학부 및 의학부로 진입하기 위한 과정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의 교양교육의 역사에서 기초교육이 도입된 시기는 대략 1960년대 중반이라고 보인다. 예를 들어 1963년까지 연세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학기초과목이란 영역은 없었다. 1965년 『요람』에는 “대학기초과목은 어떤 대학의 각 학과가 같이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 기초과목이며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의 소요 학점에 들지 아니한다”는 정의 및 단서 조항과 함께 교양 교육과정의 관리 대상 과목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연세대학교 요람 1965』, pp.81-82) 이 기간 중에 일반교양과목(연대의 요람에서는 교양 필수 과목)은 교련 포함 54학점이 유지되었지만, 1971년도부터 이공계를 중심으로 많은 교양필수 과목이 대학기초과목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요람 1971~73』, pp.96-97), 1973년 실험대학의 도입과 함께 졸업이수 학점이 140으로 축소되면서 기존 교양과목과 이수학점이 축소되면서 교양필수 과목 대체도 계속되었다.(『요람 1973~75』, pp.182-183) 즉 전통적인 일반교양과목은 줄어들고 이공계를 중심으로 대학기초과목이 교양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윽고 『요람 1978~80』에는 ‘각 대학 교양과목 및 기초과목’이라는 영역이 학점과 함께 자리잡게 된다. 이는 1956년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전후 신제 대학의 교과목인 일반교양과목, 외국어과목, 보건체육과목 및 전문과목에 추가하여 이공계의 ‘기초교육과목’이 도입된 것과 흡사하다.(土持法一, 1997, pp.238-239)

교육법시행령(제125조)을 따른 것이라고 보인다.

동국대학교(1946)의 경우 『東大七十年史』에 해방 전의 교과과정은 있으나 인가 후의 교과과정은 찾을 수 없다.

조선대학교(1948)의 경우 동 대학의 『오십년사』에는 대학 인가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있으나 교과과정에 대한 기술은 없다.

숙명여자대학(1948)의 경우 해방 후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2008년에 출간된 『숙명 100년』에는 1946년의 5개 필수과목을 ‘공통필수 교양과목’이라고 부르면서 “「숙명여자대학승격인가신청서」에 실린 교육과정”이라고 그 출처를 표기하고 있다. 숙대의 승격은 1948년 5월에 인가되었으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승격인가신청서는 당시 ‘교양과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문헌적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1989년에 출간된 『淑明五十年史』에는 “학칙 제12조에 「학점은 입학에서 졸업시까지 전공학과목 124학점, 각과 공통필수과목은 32학점, 선택과목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함을 요함」이라고 하였다”라고(p.55) 기술되어 있으므로, 2008년의 ‘공통필수 교양과목’이라는 용어 역시 집필자가 사후의 관점에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해방 후 숙명여자전문학교 시절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숙명 100년』은 필수과목에 여러 종류의 과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해방 이후 교육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학적부를 살펴본 결과, 당시에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학적부의 이수 교과목을 보면 같은 학과 학생은 모두가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교과목이 필수로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목 선택은 학년 전체 혹은 학과 전체 단위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학생의 선택권은 없었고 학교 당국이 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자대학교, 2007, p.308)

성균관대학은 1946년 명륜전문학교가 해체되고 설립되었는데, 아래는 1946년~1952년 교육과정 기술의 일부이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각 대학은 교과 내용을 일반교양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을 나누어 설치하였다. 여기서 일반교양과목은 종래에 없던 과목으로 그 설치목적은 최고학부의 지식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지식과 교양을 갖추기 위한다는 데에 있었다. 일반교양과목은 국어, 문화사, 자연과학개론, 외국어, 체육 등이었고 우리 대학에서는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유학개론이 더 부과되었다. 일반교양과목의 이수는 필수과목(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성균관대학교, 1998, p.353)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는데 동법에는 ‘일반교양과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필수과목을 일반교양과목과 전공으로 구성하고 그 비율에 대한 규정은 1952년 교육법시행령에 처음 도입되었다. 따라서 『成均館大學校 六百年史(天)』의 위의 기술은 1949년의 교육법과 1952년 교육법시행령 등이 혼재·혼동된 사후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같은 책 같은 곳에 제시된 “1951년에 대체적인 완성을 보게 된 교과과정”은(p.354)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서울대학교 역시 필수과목을 일반교양과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966년 출간된 『서울大學校二十年史』에서 「草創期の學事와 敎務」 부분의 교양과목 관련 기술을 앞의 『韓國教育十年史』의 내용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공과목, 선택과목은 日政時에도 동일한 명칭으로서 분류하고 있었으나 일반교양과목이라는 명칭과 내용을 규정한 것은 해방후의 대학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교양과목 제도는 역시 미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전공과목, 선택과목은 日政時에도 동일한 명칭으로서 분류하고 있었으나 필수과목이라는 명칭과 내용을 규정한 것은 해방후의 본교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수과목이란 현금의 일반교양



과목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는 역시 미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1966, p.53)

1946년 서울대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칙에 ‘일반교양과목’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韓國教育十年史』의 관련 기술을 가져오면서 ‘일반교양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또 ‘대학교육’을 ‘본교 교육’으로 대체한 것이 그 대강이다. 그러나 필수과목은, 나중에 분명해지겠지만, 해방 전에도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고등교육기관에 있었고, 또 ‘본교 특색’이라고 하는 1946년 서울대의 필수과목은 조선교육심의회가 제정한 것으로서 서울대에만 도입된 것이 아니다. 또 ‘필수과목’이 1966년 당시의 일반교양과목을 지칭하였다는 주장 역시 옳은 것이 아니다. 1952년 이후 필수과목은 일반교양과목과 함께 전공과목도 포함하고 있고, 설사 일반교양과목만을 놓고 보더라도 1953년 이후에는 1946년의 5개 필수과목에 철학개론을 더 한 것, 그리고 인문, 사회, 자연계열의 여러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1946년의 필수과목이 미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오류다. 나중에 이 필수과목이 1953년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일반교양과목’으로 편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목들은 그 기원이 미국의 교양교육 제도와는 무관하다. 이처럼 1966년 『서울大學校二十年史』의 기술이 모두 오류인 것은 『韓國教育十年史』의 오류를 가져오면서 몇몇 단어만을 대체하였기 때문이다.<sup>6)</sup>

분명해진 점은 사실상 1946년~1948년 사이에 설립되었거나 승격된 주요 대학들의 교과과정에 대한 사후의 기술이 아니라 당시 교과과정 자체를 보면<sup>7)</sup> 모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갖고 있고, 서울대와 연희대, 숙명여

6) 『서울大學校二十年史』의 오류는 이후 『교양교육 60년사』, 『서울대학교 60년사』, 『서울대학교 70년사』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7) 1948년 8월까지 인가된 대학의 수는 총 37교인데, 상당수의 지방 농과, 의과, 사범대학은 1952~53년 지방국립대학 설립 시에 흡수되어 교육과정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민대학의 경우는 관련 문헌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여타 주요 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확인하였다.

대만이 필수과목과 전공과목을 분리하였을 뿐이다. 또 여러 개별 대학사의 기술과는 달리 ‘일반교양과목’, ‘일반과목’ 등과 유사한 용어가 당시 교육과정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하며, 따라서 필수과목이 미국식 general education의 모방이라는 주장 역시 오류임이 확실해졌다.<sup>8)</sup>

여기서 필수과목의 정체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1946년 5개 필수과목을 지정한 조선교육심의회 고등교육 분과에서 다룬 주제와 위원의 구성<sup>9)</sup>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8 분과 구 내 이 적 자	백남운 (위원장), 김성수, 윤일선, 박중홍, 유진오, 조병옥	소령 알프레드 크로프트(Alfred Crofts; 학무국 학무과 대학담당)	- 고등교육의 목표 - 대학 및 대학교의 정의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규정 입안 방법 - 중학교, 대학, 대학교 간의 상관관계 - 남녀공학 - 대학 및 대학교의 자율 - 필수과목의 문제	- 고등교육 기관의 교수 자질 향상 방법 - 고등교육의 대중 개방 - 연구기관의 설립과 대학 원 이후 학교제도 - 학위수여 - 과학교육 증진 - 외국에서 온 학생 관리
		소령 존 고든 휘쳐(J. Gordon Fetcher; 학무국 학무과 전문학교 담당)		

출처: 조건, 2015, p.109

고등교육 분과위원회가 다룬 총 13개의 의제 중의 하나인 ‘필수과목의 문제’가 만일 한국의 고등교육에 처음으로 미국식 일반교양과목을 도입하는 건이었다면, 한국인 분과위원들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거나 혹은 다루려는 의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백남운(白南雲, 東

8) 해방 후 설립되거나 승격된 한국의 대학들은 해방 후 교양교육에 대한 기술에서 사후의 관점에 의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가 당시 학칙과 교과과정을 그대로, 가능하면 표로 제시하는 것이다. 글로 기술할 때 사후의 관점이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9) 위의 조건이 만든 심의회 고등교육 분과위원은 문헌마다 상이한 위원명단에 나오는 이름을 모두 포함시킨 것이다. 다른 한편 鄭泰秀가 편집한 학무국의 영문업무자료의 韓英對譯集인 『美軍政期 韓國教育史資料(上)』(1992)의 「월간 업무 요약(1945.12.1)」에는 윤일선과 크로프트가 제외되어 있다.(p.308) 학무국 자료는 ‘오류를 수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

京商科大学), 김성수(金性洙, 早稲田大学), 윤일선(尹日善, 京都帝國大学) 3명은 모두 일본 대학 출신이고, 박종홍(朴鍾鴻)과 유진오(俞鎭午)는 京城帝國大學 출신으로서 특별히 미국의 교양교육과 관련이 있다거나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백남운은 『朝鮮社會經濟史』를 저술한 마르크스 경제학자로서 1945년 조선학술원을 창립하였고, 1946년 서울대 국립대학안을 반대하였으며 남조선 신민당을 창당하였다. 1948년에는 金九, 金奎植과 함께 南北協商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후 북한에 남아 初代 教育相이 되었다. 또 白南雲은 조선교육심의회에서 한국의 교육이념으로 美 Park大(학부) 출신 白樂濬이 제안한 ‘弘益人間’을 일본의 ‘八紘一宇’와 흡사하다고 반대하였으나, 5개 필수과목 지정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조병옥(趙炳玉)은 학부교육(1914~1918)을 미국의 와이오밍대학(The University of Wyoming)에서 받았는데, 이 대학은 1886년 Land-Grant-Act로 설립된 미국 중서부의 주립대학이다. 와이오밍대학의 1914~1918년 *General Bulletin*에 의하면 졸업이수학점은 126이고 개별 대학이나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prescriptions)를 이수해야 하며, 영어 I, II, 군사훈련(남학생, 4년간), 체육(여학생, 4학기)은 필수과목으로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고 있으나, 졸업이나 학위 규정에 GE에 대한 조항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교육심의회는 한국인 위원들의 학력에서 특별히 미국의 GE를 다룰 수 있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찬성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힘들다.

다른 한편 일본의 경우, 1946년 3월 미국의 제1차 교육사절단이 방일하여 일본의 일반교육연구위원회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미국의 GE를 소개한 후 일본의 대학기준협회가 1947년 12월 일반교양과목에 대한 최초의 제안을 하기까지 1년 10개월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조선교육심의회는 ‘필수과목의 문제’를 1945년 11월부터 1946년 3월 초까지 불과 4개월 만에, 그것도 총 10개 분과위원회의 방대한 의제들과 함께 갑론을박 없이 심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추측된다.<sup>10)</sup> 바꿔 말해

10) 조선교육심의회는 분과위원회나 전체위원회 모두 거의 전적으로 한국말로 진행되었으며, 미군 장교들에게는 보고서의 영역본이나 영어 가능 한국인들의 설명을 들었다. 심

### 필수과목

第五條 學部ノ授業學科目ハ必修科目及選擇科目ノ二種トシ共ノ各學科日  
授業時數左ノ如シ

第一 必修科目

一 商學ニ屬スルモノ  
商工經營、會計、銀行及金融、交、保、商(品(二講義選)  
(品內一講義選))、貿易實務  
二 經濟學ニ屬スルモノ  
經濟原論、經濟政策、經濟史、財政學、統計學  
三 法學ニ屬スルモノ  
憲法、民法、法(法(總論)  
(法(總論)講義選))、法(法(總論)講義選)  
四 語學ニ屬スルモノ  
英語、商業英語

### 선택과목

第二 選擇科目

一 商學ニ屬スルモノ  
買賣組織、工場管理、原價計算、特種銀行、外國爲替、倉庫、鐵道、航海、共同海損、海上保險、火災保險、生命保險、商(品(二講義選)  
(品內一講義選))、東洋經濟事情、西洋經濟事情、植民地事情

二 經濟學ニ屬スルモノ  
日本經濟史、經濟學史、貨幣論、商業政策、工業政策、農業政策、植民政策、社會政策、經濟心理學、社會保險、社會財政、金融、統計(學各論)

三 法學ニ屬スルモノ  
行政法、民法、商事法、手續法、破產法、刑罰法、國際私法、國際公法、法制史

四 語學ニ屬スルモノ  
英語、佛語、露語、伊語、關語、西語、支那語、他語、外交史、社會學、政治學、高等數學、文藝學、東洋學、教育學、市民學、民族學、論

五 共ノ他ノ學科

○第五

東京商科大学諸規則(大正九年六月十日制定)  
東京商科大学學則(昭和八年九月制定)

1920년 東京商科大学 교육과정. 출처: 『東京商科大学一覽』(1933, 昭和八年)

의과정은 분과위원회가 의제를 심의 의결하여 전체위원회로 보고서를 보내면, 여기서 다시 심의하여 통과시킨 후 군정청에 실행을 요청하거나, 분과위원회로 반려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군정청의 미군은 조선교육심의회에 대하여 “학무국이 수행한 다른 어떤 일도 민주적인 절차, 대중의 참여, 그리고 장기계획에 있어서 조선교육심의회에 작업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고 평가하였다.(鄭泰秀, 1992, pp.60-61) 유감스럽게도 ‘필수과목의 문제’에 대한 논쟁을 정리할 수 있는 당시 회의록은 한국 전쟁 기간 중에 소실되었다고 한다.

‘필수과목의 문제’는 다른 의제와 마찬가지로 심의회의 고등교육 분과위원이나 전체 위원 모두가 마치 그 의미를 잘 아는 것처럼 제시되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고등교육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백남운의 경우 그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무엇인지를 알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적 증거가 있다. 바로 그가 수학한(1925년 졸업) 도쿄상과대학의 1920년 학칙이 그것이다.<sup>11)</sup>

第四條 授業科目ヲ分テテ必修科目及選擇科目トス但シ法律學科及政治學科ノ學生ハ其ノ選擇科目中ニ哲學科、史學科及文學科ニ屬スル科目ニ單位以上ヲ哲學科、史學科及文學科ノ學生ハ其ノ選擇科目中ニ法律學科及政治學科ニ屬スル科目ニ單位以上ヲ加フルコトヲ要ス	第五條 法律學科及政治學科ニ於ケル必修科目、選擇科目及單位數左ノ如シ
憲法	單位數
民法	五
商法	二
民事訴訟法破産法ヲ含ム	二
刑法	二
刑事訴訟法	二
羅馬法	一
外國語學	一
選擇科目	二
行政法	二
法理學	二
國際公法	二
國際私法	二
法制史	二
經濟學	三
哲學科、史學科及文學科ニ屬スル科目	三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規程』, 조선총독부 관보 제4101호 (1926.4.23.)

1920년(大正 9년) 『東京商科大學一覽』을 보면 교육과정은 商學, 經濟學, 法學, 語學으로 구성된 필수과목과 역시 商學, 經濟學, 法學, 語學에 기타 교과목이 추가된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18년 독일하여 1925년 도쿄상과대학에서 졸업한 백남운이 자신이 이수해야만 했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의미를 몰랐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교육과정도 필수와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방 전의 경성고등상업학교의 교육과정 역시 필수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1940년 연희전문 商科와 理科의 교육과정 역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며 이때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전공 혹은 비전공과 무관한 이수구분일 뿐이다.(연세대학교, 1985, pp.259-261) 주의해야 할 점은 교육과정을 도표로 제시할 경우 필수과목의 경우 이수구분을 표시하지 않고, 선택과목의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미군정기 초대 문교부장이었던 유억겸(兪億兼, 東京帝大 졸업)은 연희전문

11) 東京商科大學의 『東京商科大學一覽』(1920년, 大正 9년)의 111쪽부터 119쪽까지 편집

부교장을 하였고, 미국유학, 기독교 신도로서 미군정기 교육정책을 친미로 몰아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백낙준(白樂濬, 美 Park대 졸업) 역시 연희전문 의 교수였기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의미를 모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역시 미국식 대학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지목된 오천석이 졸업한 미국 코넬대(Cornell College)의 1920년대의 교육과정 역시 필수(required)와 선택(electives)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조선교육심의회 고등교육 분과위원회의 미군 장교로 거명된 적이 있고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자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Crofts 소령이 졸업한 미국 휘튼대(Wheaton College)의 1920년대 교육과정 역시 필수(prescribed)와 선택(electives)으로 구성되어 있다.

FIRST SEMESTER		SECOND SEMESTER	
<i>Required:</i>	<i>Hours</i>	<i>Required:</i>	<i>Hours</i>
English I	3	English I	3
French I, German I, Greek I, Latin, or *Spanish	4	French I, German I, Greek I, Latin, or Spanish	4
†Mathematics 22 or a Science	4	Mathematics 22, 21b or a Science	4
Physical Education	1	Physical Education	1
<i>Electives:</i>		<i>Electives:</i>	
Bible 1a	} (any one) 3 or 4	Bible 1b	} (any one) 3 or 4
Biology I, 3		Biology 1b, 2b, 3	
Chemistry 10, 11		Chemistry 10, 11	
Art 1a, Drawing (3)		Economics 1b	
Geology 1a, 3a		Geology 2b, 3b	
History (3)		History (3)	
Mathematics 11 (3)		Art 1b, Drawing (3)	
Physics 11		Mathematics 11 (3)	
Home Econ. 11a (3)		Physics 11	
A second Language		Home Econ. 11b (3)	
	_____	A second Language	_____
	15 or 16		15 or 16

오천석이 수학한 1920년대 미국 Cornell College 교육과정. 출처: Cornell College, 1924, p.17

아래 표는 백낙준이 졸업한 미국 파크대학의 1918년 교육과정과 1924년 연희전문학교 문과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기 위하여 1학년 과정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교과목과 학점을 비교한 것이다.<sup>12)</sup> 연희전문 문과의 경우 영어를 전공이라 간주하더라도 전공학점이 파크대학과 마찬가지로

12) 연희전문 문과의 합계는 학년별(4년) 주당 수업시간을 합산한 것이 122시간인데, 당시 연희전문은 1년 3학기제였기 때문에 2학기제로 환산한 학점은 305 정도가 된다.

낮은 편이고, 두 대학 모두 매우 다양한 자유학예 교과목을 교수하였다는 점에서 자유학예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연희전문 문과의 경우 자연 과학이 파크대학에 비해 매우 낮을 뿐이다.

		Park College(1918)	연희전문학교 文科(1924)	
1학년 (30)	필수(9.5)	영어(3), 역사(1), 과학(1, 물리, 화학 혹은 생물), 수학(2.5), 외국어(2, 라틴어, 그리스어, 불어, 독어 혹은 스페인어)	1학년 (32)	수신(1, 윤리), 성서(2), 일어(2), 한문학(3), 문학개론(2), 영어(5), 영문학(5), 역사(동양사:2, 서양사:3), 국내법제(2), 자연과학(3), 음악(1), 체조(1)
	선택(5.5)	성경, 교육학, 영어, 불어, 독어, 그리스어, 역사, 라틴어, 수작업, 수학, 심리학, 과학(농학, 가정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형태학, 회화)		
언어, 문학, 예술 (30)	그리스어·문학, 라틴어·문학, 독일어·문학, 영어·문학, 불어·문학, 스페인어, 공공 연설, 예술사, 성경문학, 음악		22	성서(6), 일문학(6), 한문학(4), 음악(3), 체조(3)
수학, 자연과학 (18)	천문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질학, 생물학, 형태학, 가정학		2	자연과학(2)
정신& 사회과학(15)	역사와 정치학, 경제학과 사회학, 심리학과 교육학, 철학		46	수신(3, 윤리), 역사(14), 사회학(3), 철학(6), 심리학(3), 윤리학(3), 논리학(2), 교육학(9), 경제원론(3),
전공	전공(20 이하), 부전공(6 이하)			영어(9), 영문학(11)=20【영어를 Major로 가정함】
합계	120(119+1학점 예비)			122(305)

원자료 출처: Park College, 1918, pp.20-23. 연세대학교, 1985, p.174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첫째, 필수와 선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식은 해방 전후에 걸쳐서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둘째, 필수와 선택은 전공과 비전공이 포함되어 있어 필수를 미국식 교양교육이라고 간주할 근거가 없고, 셋째, 미국식 대학 제도의 일부는 해방 전에 이미 선교사가 설립한 자유학예대학 전문학교를 통해 이미 들어 왔고, 넷째, 조선교육심의회의 위원이나 학무국 미군장교의 최소한 일부는 필수와 선택의 교육과정을 잘 알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1946년의 5개 필수과목은 조선교육심의회가 해방 전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皇民化 필수과목이었던 修身, 日語, 日本史, 體操·教練 등을 대신하거나(國語, 文化史), 해방 후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방향을 제시하거나(自然科學概論), 고등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外國語, 體育) 교과목을 해방 전부터 있었던 필수과목이라는 영역<sup>13)</sup>에 포함시킬 것

13) 해방 전에 일본과 한반도의 근대 고등교육 기관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도입되어 있

을 대학에 제안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sup>14)</sup>

이점은 일본 교양교육에 대한 권위자인 요시다 아이(吉田 文, 와세다대학) 교수가 필자의 “1945년 이전의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필수과목, 전문과목, 선택과목’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질문에 대한 답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요시다 교수는 ‘1918년의 대학령, 1903년의 전문학교령 등에는 필수과목, 전문과목, 선택과목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고등교육의 커리큘럼은 대학 규정이나 고등학교 규정 등 학칙에 명시된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커리큘럼의 자유화’에 대한 요시다 교수의 기술이다.

고등교육의 교육과정 유연화는 19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17년 임시교육회의에서 이전의 획일적이고 선택이 허용되지 않던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분화된 교육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수업과목 선택제, 학점제, 학과목 중심제(←학년 중심제)의 채택이 가능해진다. 단, 학년 중심제와 학과 중심제의 절충방식을 채택하여 학년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규정하였다. 이수과목에 관해서는 각 대학이 자유롭게 결정하여 대학 리스트에 게재하였다.

요시다 교수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19세기 중반 하버드대의 엘리엇(Eliot) 총장이 도입하여 미국 전역에 확산된 선택제(elective system)와 동전의 양면인 학점제(credit hours system)를 1917년 일본 대학이 채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19세기 중·후반 미국 대학의 가

---

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그 기원이 일본에서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희나 이화, 숭실 등 선교사가 세운 전문학교의 경우 내용적으로는 미국식 LAC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실제로 1920년대 미국의 LAC의 교과과정 역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교과과정이 필수와 선택으로 구성되고 자생적으로 설립된 속명여전, 보성전문의 경우 그 기원 문제는 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 14) 1946년의 5개 필수과목이 모든 대학의 설립 인가에 반드시 요구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948년 7월에 인가 받은 2년 제 공주사범대학의 초기 교과과정은 필수과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 자연과학개론은 없다. 조선교육심의회의 교사교육분과 위원회가 제시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는 5개 필수과목 중 국어, 외국어 및 체육만이 포함되어 있다.(정태수, 1992, pp.118-119)



장 큰 논쟁거리였으며, 요시다 교수가 언급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기원이 미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근대 대학을 설립하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과 함께 미국에도 유학생을 보내 교수를 양성하였으며, 이후 약 40년이 지난 1917년 경이면 일본 대학이 구미의 대학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이 점은 1914년 도쿄제대와 교토제대의 총장을 역임하고 문부대신을 지냈던 기쿠치 다이로쿠(菊池大麓)가 일본의 고등학교를 미국식 자유학예대학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아마노 이쿠오, 2017, p.79) 그러나 해방 전 고등교육 제도에 대한 견해의 대부분은 일본의 교육관련 법령과 제도, 고등교육 기관 등에 의해 식민지 고등교육이 형성되고 규정되었다는 단순한 관점에서 출발하나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등교육 제도는 어느 나라나 단순히 머물러 있지 않는 법이다. 19세기 낮은 수준의 미국 대학의 졸업생 중 약 9,000~10,000명이 독일로 유학을 갔으며,(Rüegg, 2004, p.168) 이때 세계 수준의 독일 연구중심대학을 미국식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대학원 제도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하버드대의 선택제 역시 독일대학의 두 개의 자유, 즉 교수의 ‘가르칠 수 있는 자유’(Lehrfreiheit)와 학생의 ‘배울 수 있는 자유’(Lernfreiheit)에서 후자를 도입한 것이다. 즉 대학의 교육이념이나 목표는 동서를 막론하고 과장, 비현실적인 미사여구가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실제로 실행된 교육기간,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은<sup>15)</sup> 대학 내외의 영향 등이 총 집적된 결과로서 고등교육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필수과목이라는 이수 구분에 의한 교육영역을 미국식 ‘general education’이라고 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 과목들은 딱 보니 교양과목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韓國教育十年史』에서 시작된 이런 사후의 관점은 대부분의 개별 대학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의 70년 동안이나 한국의 교육사학계와 교양학계는 일종의 반향 상자(echo chamber)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해방 전후 국내외 대학의 교과과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6)</sup> 1차 사료에

15) 앞에서 언급한 자유학예대학인 Wheaton College의 경우,

해당하는 교과과정을 도외시하고, 법령이나 교육 외적 담론을 갖고 추정하다 보니 근거 없는 설이 또 다른 설의 근거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석·박사 논문이 쓰이고 학위가 수여되었다. 또 1980년대 초 이후 젊은 교육사학자들의 해방 후 교육 주도세력에 대한 ‘성분론적’ 비판, 즉 보수주의자, 기독교도 및 미국 유학 출신 교육자들이 미국식 대학 제도를 한국에 ‘이념적 이유로’ 도입하였다는 이른바 수정주의 담론들이 학자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킬 수 있었다. 사실 확인과 도입 이유에 대한 객관적 파악을 성분론이 대체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문헌들에서 ‘미군정기’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사용되었다. 즉 특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군장교 혹은 미군정에서 일했던 한국인 교육자들이 주도하였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게, 그러나 일종의 상상을 추동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반향상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양학계의 자신의 기원에 대한 무관심이다. 동서양의 긴 고등교육의 역사, 대학의 역사, 그리고 한국 교양교육의 기원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 교양교육의 정상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 3. 한국 교양교육의 기원 문제2

#### : 1952년 교육법시행령의 일반교양과목

1949년 12월에 공포된 교육법의 子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법시행령

- 
- 16) 정근식 외 5명이 저술한 『식민권력과 근대지식:경성제국대학 연구』(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자료총서 15,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는 경성제국대학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모아 연구한 결과물이다. 총 587쪽의 내용에는 ‘경성제국대학 재학생의 숙소와 점식식사 장소와 숙소’, ‘경성제국대학 재학생의 음주와 흡연’, ‘경성제국대학 재학생의 취미와 오락’(모두 1938년 11월 조사) 등등에 대한 자료가 7쪽에 걸쳐 소개되고 있다.(pp.547-555) 그러나 경성제국대학의 학부과정과 교육과정은 1쪽에 불과하며, 학부와 학과, 학기제, 수업료, 과목 개설과 수강신청, 전공들, 그리고 이수단위를 규정한 법문학부규정 조항 번호를 담고 있을 뿐이다.(pp.546-555) 그러나 경성제국대학에 대한 학칙이나 법문학부규정을 부록 등에 담고 있지 않아 이 책만으로는 학부 교육과정을 알 수가 없다.

은 한국전쟁 발발로 지연되어 1952년 4월에야 제정되었다. 시행령 제125 조에는 대학의 교과와 학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師範大學을 포함한다)의 교과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하고 필수과목은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일반교양과목이라 함은 일반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해학과의 전문학술연구상 필수하여야 할 과목을 말한다.

일반교양과목은 좌기 각 계열에 ㉔(四)하여 3과목 이상식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문과학계 철학, 윤리학, 문학, 역사학, 심리학, 논리학, 사회학, 종교학, 교육학, 인문지리학, 인류학, 외국어

사회과학계 헌법, 법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역사학, 사회학, 통계학, 가정학

자연과학계 수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인류학, 가정학

선택과목은 전교과 과정의 3분지 1 이내로 한다.

일반교양과목은 필수과목의 3분지 1 이내로 한다.

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인 1952년~1953년 사이에 지방국립대학들이 대거 설립되었는데, 예외 없이 대학 교과를 필수와 선택으로, 그리고 필수를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즉 1952년 교육법시행령에 맞춘 것이다.

대학명	교과목 구분	년도	비고
경북대학교	동일할 것으로 추정	1952	충북대를 제외하면 모든 대학이 1952년 설립으로 같은 시기에 대학 인가 절차를 밟음
전남대학교	대학교과: 필수과목, 선택과목 필수: 일반교양과목, 전공과목	1952	1952 교육법시행령 탑재, 추가로 국어, 국문학, 체육 및 교련은 대학 공통필수
전북대학교	대학교과: 필수과목, 선택과목 필수: 일반교양과목, 전공과목	1952	‘교양: 전공’, ‘졸업학점: 선택’의 비율 이외에 기록 없음

제주초급대학	대학교과:필수과목, 선택과목 필수: 일반교양과목, 전공과목	1952	1953 4년제 제주대학 승격
충남대학	대학교과:필수과목, 선택과목 필수: 일반교양과목, 전공과목	1952	1952 교육법시행령 탑재, 추가로 국어, 국문학, 역사학, 법학, 경제학, 외국어, 체육, 교련은 대학 공통필수
청주농과대학 (충북대학의 전신)	대학교과:필수과목, 선택과목 필수: 일반교양과목, 전공과목	1953	

그런데 위 교육법시행령의 일반교양과목의 특징은 우선 1946년의 5개 필수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일반교양과목이 미국 학부 교육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라는 자유학예를 대상으로 하는 배분이수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1952년 일반교양과목의 기원이 1946년의 필수과목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암시하는 데 실재로도 그렇다. 이는 다음의 표를 보면 명백해진다.(井上美香子, 2007, p.85)

한국 교육법시행령 1952	일본 대학기준협회(昭和23年, 1948)
인문과학계 철학, 윤리학, 문학, 역사학, 심리학, [논리학], 사회학, 종교학, 교육학, 인문지리학, 인류학, 외국어	人文科学 關係 -哲学/倫理学/心理学/社会学/宗教学 /教育学 /歴史学/人文地理学 /人類学 /文学/外国語
사회과학계 [헌법], 법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역사학, 사회학, 통계학, 가정학	社会科学 關係 -法学/政治学 /経済学/心理学/人類学/教育学/歴史学/社会学/統計学/家政学
자연과학계 수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인류학, [가정학]	自然科学 關係 -数学/統計学 /物理学 /天文学/化学/地学/生物学/[心理学]/人類学
각 계열에 互하여(걸쳐서) 3과목 이상	各系列に互つて夫々三科目以上(각 계열에 걸쳐 각각 세 과목 이상)

위의 표에서 한국의 경우 인문과학계에 논리학, 사회과학계에 헌법 그리고 자연과학계에 가정학이 추가되었고, 일본의 경우 자연과학계에 심리학이 추가되어 있다. 나머지 과목은 동일한데, 인문과학계와 사회과학계의 경우 과목의 순서도 같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에 동일한 교과목들이 주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인문과학계와 사회과학계 교과목들의 순서가 우

연히 동일할 확률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데 사실상 0이다.<sup>17)</sup> 이제 한국과 일본의 교과목군이 서로 무관하게 이처럼 동일하려면 두 나라가 공통으로 받아들인 배분이수의 원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1949년 7월에 출간된 일본 대학기준협회의 「대학에서의 일반교육-일반교육연구위원회 중간보고」에는 동 협회의 대학기준 제7조에 규정한 일반교양과목이 일단 제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음악과 예술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 외국어를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18)</sup>

기준에 제시된 세 계열의 과목을 기계적으로 선정하여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일반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과목을 구성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계열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 후에 세 계열 간의 균형을 맞추고, 연차 별 필수, 선택, 자유과목 등의 다른 점들도 고려하여 각 대학 고유의 구상 하에 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문 계열에 있어서는 철학적 그룹, 역사적 그룹, 문학 그룹, 외국어 그룹으로 나누고, 사회계열에 있어서는 법·정치·경제학·사학의 네 과목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며, 자연계열에 있어서는 수학적 그룹, 물리적 그룹, 생물학적 그룹으로 나누어 보자. 이러한 그룹별을 기초로 하여 기타 과목을 선정하고, 교수 및 지도방법을 고려하여 각 과목을 편성하는 것이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분야별을 폐지하고 독자적인 구상 하에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 大學基準協會, 1949, p.12)

실제로 일본 대학기준협회는 1950년 각 계열 일반교양과목의 내용을 바꾸었다.

인문과학관계 - 철학, 윤리학, 종교학, 문학, 음악, 미술

17) 이런 가정하에 확률을 계산하자면 한·일의 인문계열 일치( $1/11! \times 1/11!$ ) × 한·일의 사회계열 일치( $(1/10! \times 1/10!) = 1/39916800^2 \times 1/3628800^2 \approx 0.5 \times 10^{-28} \approx 0$ )

18) 이외에도 전후 신제대학의 도입과 관련, 일본의 일반교육연구위원회의 보고서의 미국 교육사절단의 교과목 선정과 이수 규정에 대한 질문 등을 보면 이 교과목들이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회과학관계 -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교육  
자연과학관계 -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학, 생물학

(井上美香子, 2007, p.85)

그러나 1952년 교육법시행령 일반교양과목의 기원을 더 쉽게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教養’이라는 용어의 일본적 기원이다. ‘教養’은 중국어권에서는 ‘아이를 가르치고 기른다’는 정도의 의미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시절 ‘education’의 일본식 번역으로 ‘教養’이 도입되었다가 ‘教育’으로 대체되면서<sup>19)</sup>, 大正시대 ‘教育에 의한 內面的 成果’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大正시대의 이른바 교양주의는 고등학교(예과)에서 문학서, 철학서 탐독을 권장하던 ‘인문적’ 분위기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 전후 일본은 ‘general education’의 번역에서 ‘일반’과 ‘교육’ 사이에 ‘교양’을 추가하였다.

신제 대학 출범 초기에는 ‘일반교양’이라고 불렀으나 곧 ‘일반교육’이 되었고, 최근에는 ‘교양교육’ 혹은 ‘공통교육’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어느 경우에도 왜 개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海後·寺崎, 1969, 401-406쪽)

대학기준협회가 ‘일반교양’에서 ‘일반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신제 대학 출범 직후인 1950년으로, ‘일반교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반대로 아주 최근에 대학평의회는 4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일반교육’이라는 용어를 ‘교양교육’으로 바꾸었다.

(市川昭午, 1998, p.123.)

위 논문의 저자는 미국의 ‘general education’을 번역하면서 이를 중등교육의 연장선에서 보통교육이라고 하면 전전에 일본의 대학이 갖고 있던

---

19) 語源由来辞典, “教養” <<https://gogen-yurai.jp/kyouyou/>>

위상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liberal education’의 의미에 가까운 ‘敎養’을 추가하였다고 보고 있다. 즉 ‘일반교양교육’은 ‘general education’을 일본의 맥락에서 의역한 것이다.<sup>20)</sup> 이런 점에서 일반교육<sup>21)</sup>의 의미도 보통교육과 교양교육의 의미를 모두 지녔다는 것이다.(市川 昭午, 1998, p.123-124)

일본의 고등교육 영역에서 필자가 확인한 ‘일반교양’의 또 다른 용법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学制百年史 - 資料編’에 있는 교육심의회의 1938년(昭和十三年) ‘자문·답신·건의’의 내용이다. 여기에 고등학교 교육의 중점 사항으로 ‘황국신민 양성’, ‘심신단련’과 함께 “일반교양을 함양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여 학구열의 창달과 식견의 향상을 도모한다.”<sup>22)</sup>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일반교양이란 특정한 교육영역이나 교과목이기 보다는 단순히 고등학교의 교육목표 중의 하나로서 大正시대 일본 고등학교(예과)의 교양주의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0) 1995년 한국의 교육법시행령에서 ‘일반교양과목’이 ‘교양과목’으로 바뀌었다.

21) 해방 후 1945년 9월 16일 조직된 한국교육위원회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전문교육, 교육 전반, 여성교육, 고등교육 및 일반교육 등 7개 분과를 갖고 있었다. 여기서 ‘일반교육’의 학무국 영어 번역은 ‘Unspecified choice’로서 위원장은 교육계몽주의자이자 中東학교를 설립하고 1949년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崔奎東이었다.(정태수, 1992, pp.56-57) 그러나 이때 ‘일반교육’의 의미는 고등교육기관의 전문교육에 대비되는 교육영역과는 무관한 ‘교육 일반’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점은 『韓國教育十年史』의 목차(pp.5-7) 중 제2편 교육사를 ‘일반교육’, ‘특수교육’ 및 ‘사회문화교육’으로, 다시 일반교육을 ‘제1장 군정 하의 교육’, ‘제2장 정부 수립 후의 교육’, ‘제3장 피난 중의 교육’ 및 제사장 수복 후의 교육’으로 나누고 각 장을 다시 개요, 초등-, 중등-, 고등-, 사범-, 실업기술- 및 성인교육으로 구성한 것과 흡사하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점은 『韓國教育十年史』의 출간년도인 1960년까지 ‘일반교육’은 고등교육에서 특정 영역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 『精選版 日本国語大辞典』에 의하면 ‘一般教育’은 첫째, “인간적인 인격의 조화와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공통적인 교양을 주려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갖고 그 사례로서 메이지 시대인 1905년의 관보에 “일반교육에 있어서도 정직 근면 인내 등의 정신을 양성해...”라는 구절을 들고 있다. 두 번째 뜻으로는 ‘대학에서 전문교육에 대비되는 교육, 즉 신제 대학의 일반교육’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한국과 일본에서 ‘일반교육’의 의미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시기와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22) 일본 문부과학성의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s/detail/1318176.htm](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s/detail/1318176.htm)>

#### 4. 두 기원의 병합

1952년 제정된 교육법시행령의 대학 교과 조항은 한편으로는 체육 과목과 사범대학의 경우 교직과목의 위치로 시행도 되지 못한 체 제125조는 1953년 개정되었다. 그 핵심 내용은 일반교양과목으로 1946년 기원의 5개 필수과목에 철학개론을 추가한 것과, 1952년 기원의 3계열 배분이수에서 3과목 이상 이수를 1과목 이상 이수로 낮춘 것이다. 바로 이 개정을 통해 두 기원이 병합되었다. 그리고 1946년의 기원은 이후 교양필수로, 1952년 기원은 교양선택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교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우선 1953년 개정을 통해 교양필수 계열이 교양선택 계열보다 2배 많은 교과목 혹은 학점을 차지하게 되어, 미국식 교양교육의 주요 부분인 배분이수는, 한국에서 POSTECH 등 미국에서 교양교육을 직수입한 예외적 대학을 제외하면, 항상 부차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교양교육의 학술성 제고나 통합성 강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교양선택의 ‘티’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교양교육은 교육법시행령 등을 통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주도하였는데, 그렇다고 문교부나 교육부의 관계자들이 자유교육이나 교양교육의 역사와 역할 그리고 내용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비현실적 자문이나 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학에서 일종의 교양교육 생체 실험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된 것이다.

1971년 교육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교양필수에 국민윤리와 교련이 추가되었고, 1977년 다른 모든 교양필수과목을 제거하고, 국민윤리, 한국어, 교련, 체육만 남게 되었다. 마치 식민지 시절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강제된 수신, 일어, 체조·교련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필수는 교양교육의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국가나 대학 설립자, 총장 등의 관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간주되면 교양필수로 도입되었다. 또 해방 후 한국의 교양교육에서 ‘항상’ 부차적으로 간주되어온



배분이수 영역의 교과목들도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역별로 1과목 정도 이수로는 그 교육 효과가 의심스럽기 때문이고, 이런 인식 하에서 ‘배워서 나쁘지 않은 교과목들’이 배분이수 영역에 넘치게 된 것이다.

1998년 교육법시행령은 폐지되고 교양교육에 대한 어떤 규정도 남지 않게 되었다. 1952년부터 1998년까지 총 90개 버전의 교육법시행령에서 교양교육에 대하여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던 것은 ‘인격 도야(陶冶)’라는 교양교육의 목표뿐이다.<sup>23)</sup>

그러나 교육법시행령이 폐지되어 원칙적으로 대학이 능력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교양교육을 설계 및 실행할 수 있으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 2010년 일명 학부제가 실패하자 정부는 재정지원 정책사업을 통해 대학 간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이 시기에 등록금 동결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대학들은 이 정책사업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교양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ACE, CK1, CK2, PRIME, CORE, LINC, 인성교육,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융복합교육,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에 이어 최근의 무전공 입학과 글로벌-RISE, 여기에 정부 주도는 아니지만 공학인증제도까지 교양교육에 ‘무엇인가’를 요구하였다. 불과 15년도 안되는 시기에 대학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무엇’은 한국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을 파편화하고 있다. 즉 한국 대학의 교양은 교육과정 분열증에 걸려있다고 보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제한된 학점을 갖고 이 많은 정책사업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만지다’ 보면 실질은 사라지고 이름들만 수북하게 쌓인, 찢어진 교양 교육과정이 나오기 쉽다. 그러나 교양학계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

23) 참고로 ‘陶冶’라는 표현은 독일어 ‘Bildung’의 메이지 시대의 일본어 번역이다. 해방 전에도 ‘陶冶’는 교육학 관련 책에서 널리 사용되었지만, 해방 후 조선교육심의회 고등교육 분과위원회에서 고등교육의 목표에 포함된 ‘인격 도야’는 이후 많은 한국 대학의 학칙에도 포함되었다.(이명실, 2017, pp.61-90)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陶冶’나 ‘일반교양 과목’이 일본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그 유래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할 뿐이다.

다른 한편 정부 주도 정책사업과 대학평가가 줄을 잇던 시기는 동시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개별 대학 컨설팅을 진행한 시기로서 2016년경부터 교양교육 표준모형을 만들어 교과목 정체성 찾기 ‘계몽운동’을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컨설팅에 대한 대학들의 반응은 긍정적이고 교양교육의 이해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교육과정과 교과목 개선 결과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교육부의 대학정책 사업이 교기원의 컨설팅 내용을 그 실행 우선 순위에서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유학예교육 즉 통합교양교육과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교양교육계에서 구축하지 않는 한, 해방 후 한국 교양교육의 착잡한 역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 〈참고문헌〉

- 韓國教育十年史刊行會(1960). 韓國教育十年史. 서울豊文社
- 김영우(1995). 학교제도:한국 근대 학제 100년사,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 金鐘喆 外(1988). 韓國 高等教育的 歴史的 變遷에 관한 研究, 韓國大學教育協議會
- 吳天錫(1975). 韓國新教育史, 光明出版社
- 鄭泰秀 編著(1992). 美軍政期 韓國教育史資料集(上), 弘芝苑.
- 이명실(2017). ‘도야’ 개념의 수용에 관한 일 고찰, 한국교육사학 제39권 제4호, pp.61-90
- 조건(2015). 美軍政期 吳天錫의 教育정책 수립과 역사교육, 역사와 교육, 제21호, 2015,
- 大學基準協會(1949). 大學に於ける一般教育, 一般教育研究委員會中間報告
- 市川 昭午(1998). 一般教育の滅亡と復活?, 高等教育研究 第1集
- 井上美香子(2007). 大學基準協會「一般教育研究委員會」の研究. 日本の教育史学 第50集. 教育史學會
- 土持法一(1997). 新制大學における「一般教育」の導入と展開の過程, 日本の教育史学 40卷. 教育史學會
- 吉田 文(2024). “日本の高等教育制度に関する洪先生のお問い合わせ”,
- 아마노 이쿠오(天野郁夫, 2017). 박광현·정중현 역. 제국대학, 산치럼
- Walter Rüegg(ed. 2004),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Vol I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江原大學校 五十年史:1947~1997.(1997)
- 東大七十年史.(1976)
- 동아대학교 50년사:1946~1996.(1998)
- 公州師範大學 三十五年史:1948~1983.(1983)
- 경북대학교 50년사:1946~1996.(1996)
- 부산대학교 오십년사:1946~1996.(1997)
- 서울大學校二十年史.(1966)
- 成均館大學校 六百年史(通史篇).(1998)